

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20도16182 업무방해
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
상 고 인 검사
변 호 인 법무법인(유한)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
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. 10. 30. 선고 2019노2671 판결
판 결 선 고 2022. 6. 9.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원심은 기존 주위적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추가된 제1,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.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

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_____

주 심 대법관 김재형 _____

 대법관 안철상 _____

 대법관 이흥구 _____